

\*지난 6월 28일자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중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 대통령령 제13,406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신고의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신고횟수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9조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페놀류
- 14. 트리클로로에틸렌
-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30으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3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진

[별표 3]

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금액단위 : 원)

오염물질	구분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 부과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청정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유해물질	페놀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아나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해물질	유기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포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 2. 청정지역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3.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 4. 제11조제2항제2호 다목의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부과계수의 산정에 있어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회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폐놀 등 오염물질을 배출부과금부과대상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위반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염방지시설의 근원적인 개선 및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폐놀류 등 3개항목의 오염물질을 배출부과금부과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영 제9조)
- 나. 배출부과금산출의 기본단위인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를 약 2배내지 3배상향조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함(영 제10조제4항 및 별표3).
- 다.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배출부과금의 위반회수별부과계수의 가중치를 종전의 100분의 105에서 100분의 130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방지시설의 근원적인 개선 및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하도록 유도함(영 제12조제2항). <법제처 제공>

◎ 환경처고시제91-48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7호 및 제63조 별표10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9월 20일

환경처장관

정화조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합성수지재로 제조된 정화조로서 처리대상인원 30인용이하의 정화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폴리에틸렌정화조는 10인용이하에 한한다.

환경관리인. 1991. 10

2. 종 류 : 정화조의 종류는 재료 및 호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재 료	호 칭
FRP 및 PVC재	5인용, 10인용, 15인용, 20인용, 25인용, 30인용
PE재	5인용, 10인용

3. 정화조의 재질기준

재료구분	재 질 기 준				
FRP 및 PVC	가. 정화조의 겉모양은 부분적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인장강도, 휨강도, 인장탄성율, 휨탄성율, 경도 및 내약품성은 KS F4803(정화조용 합성수지재의 성능)에 따른다.				
다. 구조물의 각 두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FRP		PVC	
정화조의높이	외벽재	내벽재	외벽재	내벽재	
1.5m미만	3mm 이상	2mm 이상	5mm 이상	3mm 이상	
1.5m이상 1.7m미만	3.9mm 이상	3.6mm 이상	5.4mm 이상	3.1mm 이상	
1.7m이상 1.9m미만	4.9mm 이상	4.2mm 이상	6.4mm 이상	3.6mm 이상	
1.9m이상 2.1m미만	5.9mm 이상	4.9mm 이상	7.2mm 이상	4.2mm 이상	
2.1m미만	5.6mm 이상	5.2mm 이상	7.7mm 이상	4.5mm 이상	
라. 재하강도 시험결과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E (재생품 포함)	가. 정화조의 겉모양은 부분적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인장강도 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인 장 강 도	kgf / cm <sup>2</sup>			0.8×10 <sup>4</sup> 이상	
인 장 탄 성 율	kgf / cm <sup>2</sup>			0.1×10 <sup>4</sup> 이상	
누 수 시 험	-			누수현상이 없을 것	
내 약 품 성	mg / cm <sup>2</sup>			±0.5이하	
다. 정화조의 두께 등은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단		위 외 벽 재		내벽재	
두께	mm	9이상		7이상	
보강피	mm(폭)×mm(두께)×갯수	18×18×4이상		-	
보강지주	mm(폭)×mm(두께)×갯수	36×36×6이상		-	
주)보강피, 보강지주의 두께는 외벽재 두께를 포함한다.					
라. 재하강도 시험결과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정화조의 재질검사기준

- 가. 겉모양 육안 및 자 등으로 검사한다.
- 나. 재료시험

(1) 시험편

① 제품에서 잘라내어 시험편을 만든다.

② 인장, 휨시험에 있어서 표면보호층이 있는 시험편은 이것을 제거하여도 좋다.

③ “내약품성”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50mm×50mm로 하고 시험액의 종류마다 각각 3개로 한다. 단, 절단면에는 수지를 도포하는 등의 처리를 하여도 좋다.

(2) 인장강도

① F.R.P재 및 P.V.C재는 KS F4803(정화조용 합성수지재의 성능)의 3.1.2에 따라 시험한다.

② P.E재는 KS M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에 따라 시험속도를 50mm / min로 한다. 다만, 인장강도의 온도에 따르는 변화율 보정식은  $f_{20}=f_t-1.4(20-t)$

여기에서  $f_{20}$  : 20°C에서의 인장강도(Kgf / cm<sup>2</sup>)

$f_t$  : t°C에서의 인장강도(kgf / cm<sup>2</sup>)

1.4 : 온도보정계수

t : 시험시의 온도(°C)

(3) 인장탄성율

KS F4803(정화조용 합성수지재의 성능)의 3.1.3에 따라 시험한다.

(4) 휨강도 및 휨탄성율

KS M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5.2.11에 따라 시험한다.

(5) 내약품성

KS F4803(정화조용 합성수지재의 성능)의 3.1.5에 따라 시험한다.

(6) 경도

F.R.P재는 KS M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5.2.5에 따르고, P.V.C재는 KS M 3037(플라스틱의 로크웰경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 치수

치수의 측정은 해당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라. 구조 및 규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별표10의 1정화조의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마. 재하강도

(1) F.R.P재 및 P.V.C재는 정화조의 상부에 하중(수평투영면적×230kgf / m<sup>2</sup>)을 균등히 재하하고 파손의 유무를 조사한다.

(2) P.E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① 몸통부분

몸통의 상부에 하중(수평투영면적×230kgf / km<sup>2</sup>)을 균등히 재하하고 파손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 윗판부분

윗판상부에 하중(230kg)을 균등히 재하하고 파손의 유무를 조사한다.

바. 누수시험

정화조의 완제품에 물을 만수시키고 24시간 방치시킨 후 누수여부를 조사한다.

5. 시료채취장소 및 방법

시료는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 입회하에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6. 검사기관

정화조의 재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검사소

나. 재단법인 한국기계연구소

7. 검사성적서 발행 등

가. 정화조의 재질검사는 재료별, 호칭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기관은 정화조의 재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결과 및 적합·부적합판정을 명시한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경없는 환경보호 맑아지는 지구환경**